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 미국

### FTC, 프리퍼드헬스서비스에 대한 가격담합 금지 명령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금일, 프리퍼드헬스서비스에 대해 소속 회원 의사들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가격담합 관행을 금지하는 동의명령을 내렸다.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의사와 온코니메모리얼병원으로 구성된 내과 병원 기관이다.

FTC에 따르면,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소속 의사들을 대신해 “계약대리인” 역할을 하며 독단적으로 진료비 체계를 설정하여 이를 건강보험기관과 환자들에게 적용해 왔다. 이 기관 소속 의사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세네카 지역 및 그 주변에서 독립적인 내과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기관은 이 기관 소속 의사들에게 연락하여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FTC는 이를 건강보험기관이 진료기

관에 대해 더 높은 집단가격담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관계의 의사들이 담합하여 건강보험기관에 높은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입증될 경우, FTC는 소비자(환자)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수잔 크레이튼 FTC 공정경쟁국장은 말했다. 그러한 집단 가격담합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진료 기회도 제한할 수 있다.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사업 모델에 따라 건강보험기관과의 협상시 소속 의사들의 “계약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진료계약 협상시 단체협상도 수행한다.

프리퍼드헬스서비스측은 소속 의사들을 위해 수평적 가격담합을 조작하지 않는 “메신저 모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FTC는 프리퍼드헬스서비스가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FTC는 고소장에서 환자와 계약 협의시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이사가 작성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의사 진료비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퍼드헬스 서비스의 소속 의사들은 이사회가 승

인한 진료비 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회원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건강보험기관이 프리퍼드헬스서비스의 진료비 체계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 감독하에 이사는 ‘그에 상당한’ 진료비 체계로 계약을 협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사회와 다른 소속 의사들이 ‘그에 상당한’ 진료비 체계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소속 의사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리퍼드헬스서비스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

고소장에 따르면, 프리퍼드헬스서비스의 집단계약 관행, 건강보험기관과 거래시 단체교섭 및 기타 계약조건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건강보험기관에 대한 거래거부 압박 행위 등은 모두 FTC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FTC는 프리퍼드헬스서비스가 소속 의사에게 지불되는 보험금을 다수의 건강보험기관에 강제로 인상하여 세네카 지역 내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이러한 공동진료비 협상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음은 물론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동의명령을 통해 프리퍼

드헬스서비스가 의사들과 계약을 맺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소속 의사를 대신해 환자 또는 건강보험기관과 진료비를 협상하는 행위, 환자 또는 건강보험기관과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환자 또는 건강보험기관과의 거래거부나 프리퍼드헬스서비스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환자나 건강보험기관과 거래하는 행위 등 고소장에서 주장했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았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프리퍼드헬스서비스가 환자 또는 건강보험기관과의 거래조건이나 거래여부에 관해 의사들의 정보교환을 돋는 것을 금지하고, 3년간 프리퍼드헬스서비스에 대한 'fencing-in relief'를 적용하게 된다. 'fencing-in relief'는 프리퍼드헬스서비스가 건강보험계약과 관련해 의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 계약과 관련해 대리인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

여타 위원회 명령과 동일하게 프리퍼드헬스서비스에 대한 이번 명령에서도 일반적인 공동협상 금지조항에 서 특정 유형의 계약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정당한 위험분담 공동계약, 또는 정당한 진료통합 공동계약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의사들과 적법한 공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한 계약에 참가하는 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계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

원회 웹사이트의 동의명령 분석에 나와 있다. 그러나 동의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3년간 이러한 유형의 계약체결시 사전에 FTC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대리계약체결 금지기간이 만료된 후 3년간 환자 또는 건강보험기관과의 협상에 있어 의사를 대신하는 대리계약체결시 사전에 FTC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프리퍼드헬스서비스는 동의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고소장과 동의명령 사본을 소속 의사들에게 전달해야 하며, 환자나 건강보험기관의 요청시 기존의 계약 관계를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한다. 동의명령의 만료 시한은 20년이다.

2005. 3. 2. 연방거래위원회

### **클리브랜드의 고철회사, 공급업체 할당과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클리브랜드 주에 위치한 고철회사인 M. 와인골드사와 해리 록 & 어소시이츠사의 소유주와 직원들이 오늘, 공급업체 할당과 고철 입찰담합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법무부가 오늘 발표했다. 또한 해리 록 & 어소시이츠사는 전신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모든 관련 피고는 이미 기소된 상태였지만, 오늘 모든 기소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클리브랜드주 오하이오 샤크린 폴

스에 소재한 M. 와인골드사와 해리 록 & 어소시이츠사와 회사직원 로렌 마골리스 씨는 2004년 1월 15일 제기된 3개 항목의 기소혐의에 대해 미국 클리브랜드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1993년 12월 초부터 1999년 10월까지, 그리고 1993년 12월 초부터 1999년 11월까지 노스이스트 오하이오원 지역에서 공급업체를 할당하고 고철을 입찰 담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리 록 & 어소시이츠사는 2000년 1월 경쟁업체와 입찰담합을 시도해 공급업체의 고철을 빼앗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전신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유죄답변 동의에서 와인골드사의 M. 와인골드사 사장과 해리 록 & 어소시이츠사에 대해 13개월의 징역형과 70만 달러의 벌금을 권고했다. M. 와인골드사와 해리 록 & 어소시이츠사는 각각 565만 달러, 합계 1,13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다는 데 합의했다.

유죄답변 동의에서 로렌 마골리스에 대해 벌금 70만 달러와 10~12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했다. 유죄답변 동의는 법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고철은 스탠핑 공장 등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고철회사들은 고철을 제재소나 주조장 등과 같은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고철을 매입, 분류 및 처리한다. 이번 입찰담합에는 금속 및 비철금속 고철

이 모두 포함되었다.

2005. 3. 1. 연방법무부

### Dupont Dow, 합성고무의 가격 카르텔에 관하여 유죄답변 하는 것에 동의

Dupont Dow Elastomers는 합성고무 카르텔에 참가한 것으로 인해 유죄의 답변 및 8,4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하였다.

고무제품에 관한 사건의 벌금 총액은 금일까지 2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Dupont Dow Elastomers L.L.C.는 타이어, 점착제, 방수기공직물, 가구 및 신발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모에 참가한 것으로 인하여 유죄답변을 할 것과 8,4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법무부는 금일 공표했다.

클로로플랜고무로도 알려진 폴리클로로플랜고무의 미국에서의 연간매출은 약 3억 5,000만 달러이다. Dupont Dow Elastomers는 네오플랜이라는 브랜드로 폴리클로로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금일의 기소는 폴리클로로플랜 산업에서 현재 진행중인 가격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기소이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중죄의 죄로 기소된 소송에 의하면, E.I. Dupont de Nemours & Company 및 Dow Chemical Company에 의해 1996년에 설립된 델라웨어 소재 기업의

Dupont Dow Elastomers는 1999년 가을부터 2002년 4월에 걸쳐 경쟁기업과 공모하여 미국내외에서 판매한 폴리클로로플랜고무의 가격을 유지했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나 동의협정하에 Dupont Dow Elastomers는 계속 중의 폴리클로로플랜고무 심사에 있어서 정부에의 지원에도 동의했다.

「금일의 동의협정은 국제가격카르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트러스트국의 계속적인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R. Hewitt Pate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은 언급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카르텔은 미국의 수백만 소비자를 해하고, 카르텔 참가기업은 체포 및 처벌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Dupont Dow Elastomers는 공동모자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를 하여 기소되었다.

- 미국내외에서 판매된 폴리클로로플랜고무의 가격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과 회합에 참가하고
  - 이러한 교섭과 회합에서 미국내외에서 판매되는 폴리클로로플랜고무의 가격유지에 합의하고
  - 합의에 도달한 협정의 실행 및 순수(順守)에 관한 의논에 참가했다거나 회합에 출석하고
  - 도달한 합의에 따라 가격의 공표 및 할당을 하고
  - 미국내외에서 폴리클로로플랜 판매 정보를 교환하였다.
- 「동 사안은 작년에 기소된 화학고무, NBR 및 기타 다른 합성고무와

같은 다양한 고무관계 산업에 있어서의 사안에 뒤이은 것이다」고 Scott Hammond 반트러스트국 형사담당 차장은 언급했다. 「금일까지 이러한 사안에 2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과했다. 금일 기소된 기업은 폴리클로로플랜고무 산업의 계속중인 심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Dupont Dow Elastomers는 서면법 제1조에 위반했으나 동 위반이 2004년 6월 이전인 경우, 법인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 및 최대 3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상한액은 어느 쪽이든 법정상한액을 넘는 경우는 범죄에 의해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에 의해 피해자에게 일어난 손실의 2배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금일의 기소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 연방수사국에 의해 행해진 계속중인 심사의 결과이다.

2005. 1. 19.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E U

### 유럽위원회, 판유리와 자동차유리 업종에 대해 조사

유럽위원회는 위원회 관리들이 2005년 2월 22, 23일 양일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판유

리), 이탈리아(자동차유리) 내 몇몇 판유리와 자동차유리 제조업체를 불시점검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관련 제조업체들이 가격인상을 담합하고 판유리 분야에 소위 '에너지 과징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믿을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유리 제조업체들이 고객을 활동하고 공급쿼터와 가격담합에 합의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판유리는 주로 건설업종에서 사용되는 유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자동차 업계에서 가공하여 사용되며, 자동차 유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새로운 차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위원회 관리들은 불시점검시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 당국 관계자와 동행했다. 그러나 두 개 회원국은 해당국 가의 공정거래 당국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조사했다.

불시점검은 경쟁제한적 사업관행과 독점력 남용(제81조 및 제82조)에 관한 EC조약의 시행절차를 정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2003년 1월) 제 20조에 의거 예상되는 카르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단계이다. 유럽위원회의 이러한 조사 자체가 기업들이 반경쟁행위를 위반하고 있다거나 조사결과를 예단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럽위원회는 변호 권리 특히, 기업이 반공정거래 재판에서 변론할 권리를 존중한다.

카르텔 의혹 조사에 있어서 엄격한 미감시한은 없다. 조사 기간은 각 사안의 복잡성, 관련 기업의 협력 정도, 변호 권리의 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

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EC조약 제81조는 기업간 합의, 기업 협회의 결정, 회원국간 교역에 영향을 주거나 EU 단일시장내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시키려는 조직적 사업관행을 금지한다. 특히,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 생산·시장·기술개발·투자를 제한 또는 규제하는 행위, 시장이나 공급원을 나누어 갖는 행위, 동일한 거래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교역 상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 성격상 또는 상업적 용도로 볼 때 해당 계약 내용과 무관한 부가 의무를 교역 상대방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행을 금지한다.

2005. 2. 24. 유럽위원회

### 유럽위원회,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 lsh와 lesy의 합병 사안을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회부

EU 합병규정에 의거, 유럽위원회는 북라인-웨스트파리안 지역 네트워크 케이블사업자 lsh에 대한 헤시안 지역 케이블 사업자 lesy의 인수 계획과 관련하여 독일의 공정거래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주된 사유는 두 사업자 모두 독일 내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이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들 양사의 합병이 독일내 경쟁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lesy와 lsh는 각각 헤시안 지역과 북라인-웨스트파리안 지역에서 도이

치텔레콤에게서 매입한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두 업체는 가정과 여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라디오와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이 이 사안을 자국에게 회부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이는 이들 업체의 합병이 독일 케이블 TV 시장, 즉 독일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요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회부 조건이 충족되며, 연방카르텔청이 과거 케이블 TV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에 의한 조사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lesy와 lsh는 각각 독일내 자사 거점 지역(분데스란더)에서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일 이외 지역에서는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케이블 TV 시장은 유럽 공동체내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 양사의 합병 계획이 독일 케이블 TV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방카르텔청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회부 결정후, 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연방카르텔청에게 있다고 보고 이 합병이 독일 케이블 TV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05. 2. 15. 유럽위원회

## 유럽위원회, EDP(Energias de Portugal)와 ENI에 의한 GDP(Gas de portugal)의 취득을 금지

유럽위원회는 유효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포르투갈의 전력회사 Energias de Portugal(EDP)과 이탈리아의 에너지기업인 ENI에 의한 포르투갈 Gas de Portugal(GDP)의 공동경영에 의한 기업매수안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상세한 심사후 위원회는 당해 매수가 포르투갈에서의 전력의 도매 및 소매시장에 있어서의 EDP의 지배적 지위와 포르ту갈의 가스시장에 있어서의 GDP의 지배적地位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집중은 전력 및 가스시장의 자유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봉쇄하는 동시에 국내 수요자 및 산업용 수요자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다. EDP 및 ENI에 의해 제출된 개선안은 경쟁 상의 우려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Neelie Kroes 경쟁담당위원은 「유럽위원회는 소비자가 공급자의 선택 및 보다 낮은 가격 시점에서 합병 후의 유효한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당해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으로는 당해 시장의 공급자가 효율적이면서 보다 수월하게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 신규시장으로의 접근 효과를 중화해 버릴 것 같은 기업의 협력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와 같이 신규로 자유화 된 시장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확보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일이다. 이 특정한 사례에서 기존의 전력 및 가스공급자의 시장지배적地位를 강화하는 것은 포르투갈의 소비자 및 산업용 수요가에게 있어 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할 것이며, 포르투갈 경제의 경쟁력을 사라지게 한다. 적절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어쩔수 없이 동 합병을 금지시켰다」고 언급했다.

EDP는 포르투갈의 전력회사이며, 발전, 송전 및 배전을 하는 기업이다. 또한 동 사는 스페인에서도 동 사 관련 회사(Hidrocantabrico 및 Naturcorp)를 통해서 전력 및 가스사업을 하고 있다.

ENI는 에너지 공급 및 배송망을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GDP는 포르투갈의 가스회사이며, 포르투갈에서 가스배송망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는 천연가스의 수입, 비축, 운송 및 도매공급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포르투갈 국내의 6개 가스공급회사 중 5개를 산하에 두고 있다(여섯 번째 회사는 EDP의 산하에 있다).

포르투갈의 전력시장은 현재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또한 포르투갈의 가스시장은 두 번째의 EU 가스지령(2003/92/EC)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 절차는 발전(發電)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 조기개방 개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합병안이 포르투갈의 가스 및 전력공급시장에 줄 가능성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 합병이 포르투갈의 전력도매 및 소매시장에 있어서의 EDP의 지배적地位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동 합병은 GDP가 전력시장에서 경쟁하는 잠재적地位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 가스는 전력을 제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여서, 당해 합병으로 인한 집중으로 포르투갈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가능성 있는 발전사업자를 그들의 주된 경쟁사업자, 즉 EDP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집중은 또한 (EDP에 의해 지배된) 가스 수요의 중요한 부분의 억제 및 가스시장에 가장 신규참입의 가능성 있는 EDP의 제거를 통하여 포르투갈의 가스시장에서의 GDP의 지배적地位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2004. 12. 9. 유럽위원회 발표문

## 일 본

### 공취위, 온천이용시설 사업자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온천이용시설 사업자가 오인을 유발한 만한 표시를 한 것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우량 오인)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조치 했다. 이 사업자는 홋카이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쿄도에 소재하며 소비자를 위한 대

출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 배포하는 광고 선전용 포켓 티슈를 이용하여 자사가 경영하는 여관에 부대시설로 딸린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이 광고가 일반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시 내용을 살펴보면, “헤르니아(hernia)는 100% 반드시 낫습니다”라고 표시하고는 이와 동시에 “절대적인 효과를 얻었던 고객의 체험담”으로서 “척추간판 헤르니아로 걷는 것도 힘들었던 것이, 온천 치료후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많이 편해졌다. 또한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오카야마현/남성 58세)”라고 2003년 9월 무렵부터 2004년 3월 무렵까지 광고를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헤르니아가 완전하게 치유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광고된 체험담 또한 해당 온천을 이용한 사람의 척추간판 헤르니아에 대한 효과를 현저하게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4년 3월 무렵부터 8월까지는 “심전도 이상 증세나 헤르니아가 100% 낫습니다”, “뇌일혈에 의한 언어 장애, 반신불수도 대부분 낫습니다”, “순환, 호흡계, 위장, 간장, 신장, 당뇨, 암, 부인병, 아토피, 습진, 신경통, 허리, 무릎, 관절통, 류머티즘, 자율신경 실조증, 비만, 안질, 축농, 무좀, 치질 등의 모든 병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이에 대한 체험담으로서 “신경통 류마티스로 치료비를 엄청 들여도 낫지

않았던 것이 9일만에 나아 버렸다(홋카이도/여성 69세)”, “아토피였던 것이 매일 8시간의 온천욕과 3리터의 탄산수 음용으로 거짓말처럼 피부가 반들반들하게 되었다(도쿄/여성 23세)”라고 표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또한 헤르니아 및 심전도 이상을 수반하는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되거나, 뇌출혈에 의한 언어 장애 및 반신불수가 된 사람의 증상의 대부분이 해소되거나 또는 해당 광고에 예시된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질병의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체험담도 해당 온천을 이용한 사람의 질병 또는 그 증상에 대한 효과를 현저하게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르니아란 체강 안쪽을 덮고 있는 피막(복막·흉막·경막 등)이 장기·조직을 감싼 채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생긴 간극을 통해 탈출된 상태를 말하는데, 복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흔히 탈장(脫腸)이라고 불리는 것은 소장이 탈출한 것을 말한다. 또한 헤르니아는 아니지만 뇌·폐·추간판(椎間板) 등이 일탈하여 헤르니아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005. 3. 2. 공정취인위원회

### 단위농협동조합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8대 지역 농업협동조합(이하 단위농협)에 대해 단위농협이 사업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복합경영촉진시설의 리스 사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1항(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

복합경영촉진시설이란 재배기능 외에 육묘기능 등을 겸비하는 생산시설(비닐하우스를 포함)을 말하는데, 다른 농업용 공동이용시설(방제시설, 고품질 토비 제조시설 등)과 제휴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농업 진흥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인 지역 농업기반 확립 농업구조 개선사업 및 경영구조 대책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복합경영촉진시설의 리스 사업 주체는 복합경영촉진시설을 3호 이상의 이용 농가에 리스하고 있다.

단위농협 스스로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 농업기반 확립 농업구조 개선사업 또는 경영구조 대책사업에 근거하여 복합경영촉진시설 리스사업(이하 리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리스를 받기 위해서 3호 이상으로 결성한 단체나 단위농협의 조합원에 대해, 이들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및 그 외의 생산 자재를 단위농협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을 단위농협에 출하하도록 의무 지우는 것은 단위농협의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취인위원회는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2005. 3. 1. 공정취인위원회

## 공무원시험 준비강좌 개설학원 에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시카와 학원(이하 이시카와 학원), 학교법인 후지 학원(이하 후지 학원) 및 유한회사 선라이즈 학원(이하 선라이즈 학원)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우량 오인)의 규정 위반으로 이들 사업자에 대해 배제명령을 내렸으며, 사단법인 오키나와현 전수학교 각종 학교 협회에 대해 산하회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표시를 적절하게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시카와 학원, 후지 학원 및 선라이즈 학원은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전수학교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수험용 각종 강좌를 신문을 통해 광고했다. 그런데 이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고 우량하다고 표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고 우량한 것처럼 표시를 했던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항후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배제조치를 했다. 또한 사단법인 오키나와현 전수학교 각종 학교협회에 대해서는, 산하의 회원에 대해 이 사건 배제명령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합격자 수 등의 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시카와 학원은 작년 3월 17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및 같은 날짜

류큐 신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2003년도에 공무원 채용시험 대비강좌를 수강한 사람 중 88퍼센트가 제1차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표시했으며, 광고에 이름이 기재된 총 51명 모두가 해당 강좌를 수강하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표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강좌를 수강한 자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고, 또 이름이 기재된 사람 중에는 해당 강좌를 수강했기 때문에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9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후지 학원 역시 작년 2월 19일, 3월 2일 및 3월 18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및 같은 해 2월 24일, 3월 10일 및 3월 23자 류큐 신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문학교 IT컬리지 오키나와의 공무원 채용시험 대비강좌를 수강한 자들 가운데, 2,651명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강좌의 수강생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공무원 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했던 것에 지나지 않고, 이름이 기재된 사람 중 해당 강좌를 수강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자들도 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 2. 25.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참가에 대해 경쟁법상의 이슈

전력·가스·전기통신사업에서는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신규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과 가스 등의 공익사업자 사이의 상호 참가가 행해져 여러 개의 사업 분야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경쟁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참가는 설비면에서 다른 신규 참가자와 비교해 우위성이 있으므로 경영 규모가 큰 다른 공익사업 분야의 기존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사업자 사이에 상호 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쟁상의 폐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정취인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사업자들로부터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상호 참가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공익사업 분야의 상호 참가에 대해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들을 밝혔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지금까지 전기, 가스, 전기통신사업의 개개의 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지침을 책정하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앞으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참가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이슈들을 명확화하는 데에 노력하기로 했다.

2005. 2. 18. 공정취인위원회